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

* 기준 : 2022.10.31.

1 총괄

소관 위원회 수	평균 회의실적	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			
		미개최	1회개최	2~3회 개최	4회이상개최
2개	0회	2개	0개	0개	0개

2 주요내용

연번	위원회 명	설치 근거	위원수			여성위원	
			계	당연	위촉	여성	비율 (%)
1	방사능재난조사 위원회	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3조	6~9		6~9		
2	원자력손해 배상심의회	원자력손해배상법 제15조	11(최대)	1	10(최대)		

3 정책현장 활동실적 * 해당사항 있는 경우(필요시 세부자료 첨부게시)

위원회 명	주요 내용	비 고

4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

1.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

□ 설치 현황

* '22년 10월 31일 기준

① 명칭		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		
② 소속 및 성격		소 속	주 관	성 격
		원자력안전위원회	방재환경과	행정위원회( ) 단순자문( ) 심의(√) 의결( )
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(입법형식)		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43조(2004.2.16.) 정부입법(√) 의원입법( )		
④ 위원회 구성일		미구성		
⑤ 존속기한 및 근거		존속기간 : 미설정		
⑥ 설치목적		방사능재난 발생 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		
⑦ 기 능		방사능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		
⑧ 위원 (총○명)	위원장(임명권자)	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(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) * 당연직 여부( )		
	공무원 및 민간위원 (총 8명 이내)	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,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원자력사업자 소속 임직원,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사능재난분야 전문가		
	기타			
	직무윤리 규정	**(공무원의제)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6조의2** **(해촉기준) 미도입**		
⑨ 회의 개최실적*	본회의	출석 0회, 서면 0회		
	개최장소			
	분과회의	분과위원회명 : 분과위원회 없음		
		출석 0회, 서면 0회		
⑩ 예 산		'22년 : 총 0천원		
⑪ 소관부서·담당자		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기술서기관 공병문(02-397-7359)		

□ 활동내역서

1. ’22년 10월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

○ 해당 없음

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

○ 해당 없음

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

○ 해당 없음

2.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

□ 설치 현황

* '22년 10월 31일 기준

① 명칭		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		
② 소속 및 성격		소 속	주 관	성 격
		원자력안전위원회	방재환경과	행정위원회( ) 단순자문( ) 심의(√) 의결( )
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(입법형식)		원자력손해배상법 제15조(1969.1.24.) 정부입법(√) 의원입법( )		
④ 위원회 구성일		미구성		
⑤ 존속기한 및 근거		존속기간 : 미설정		
⑥ 설치목적		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 조정		
⑦ 기 능		원자력손해 배상에 관한 분쟁 조정,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		
⑧ 위원 (총○명)	위원장(임명권자)	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* 당연직 여부(√)		
	공무원 및 민간위원 (총 10명 이내)	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,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, 의사 및 보험, 원자력 또는 농림·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		
	기타			
	직무윤리 규정	(공무원의제)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의2 (해촉기준)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9조의3		
⑨ 회의 개최실적*	본회의	출석 0회, 서면 0회		
	개최장소			
	분과회의	분과위원회명 : 분과위원회 없음		
		출석 0회, 서면 0회		
⑩ 예 산		'22년 : 총 0천원		
⑪ 소관부서·담당자		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주무관 최기만(02-397-7350)		

□ 활동내역서

1. ’22년 10월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개최 상세내역

○ 해당 없음

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

○ 해당 없음

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

○ 해당 없음